

제8회 극지법심포지엄 동향 및 이슈



극지연구소

2015. 12. 9. (수)

서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1. 극지법심포지엄 소개

- 개요
- 논의 동향 (2008~2016)

2. 2015 극지법심포지엄 주요 내용

- 극지의 과학과 법
- 제3극지(Third Pole)의 거버넌스
- 그린란드 독립추진과 이누이트 보호

3. 숨은 이슈

- 사전주의 원칙
- 환경난민 문제

1. 극지법심포지엄 / 개요

Polar Law Symposium...?

- 아이슬란드 Akureyri 대학교의 Polar Law Institute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 극지법 학술행사
- 남북극에 관한 국제법, 국내법,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룸
- 처음에는 북극권 유럽국가 연구자 중심이었으나, 최근 미국과 한·중·일의 참가로 범세계적 학술모임으로 발전

Polar Law Institute...?

- Akureyri 대학의 Polar Law 석사과정 개설과 함께 설립(2008)
- Polar Law Symposium 개최, 극지법 교육과정 지원, Yearbook 간행, 융합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이 목적





1. 극지법심포지엄 / 주요 이슈 (1)

2008 심포지엄

-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 및 야생동식물 보호**
 - 자연자원, 북극곰, 생명자원탐사 등
-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인권**
 -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 원주민 인권 및 거버넌스
- **극지의 관할권 이슈**
 - 극지 해역의 관할권, 대륙붕, 북극권의 국가적 이익 vs 공동의 이익

2009 심포지엄

- **새로운 운송항로의 북극해 영향**
 - 북극항로, 북극항행의 관할권문제, 북극이사회와 북극항로
- **효과적인 환경 거버넌스**
 - 남북극의 보호지역, CCAMLR의 어업규제, 고래잡이 규제
- **자원의 탐사(exploration)와 개발(exploitation)**
 - 극지해양과 UNCLOS 대륙붕, 북극 광물자원, 아이슬란드 재생에너지
- **극지와 인권**
 - 그린란드 자치정부, Faroes 제도, Chukotka 원주민

2010 심포지엄

- 북극 지역의 **교육권**
 - 법정(의무) 교육제도, 소규모 사회의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
- 인권에 대한 다각적 접근
 - 환경손상의 건강할 권리 침해, 경제위기와 인권, **인간존엄성**
- 환경과 개발
 - 북극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자연의 일부가 될 권리, 원주민의 환경권
- **Good governance & Self-governance**
 - Nunavik의 자립, 북극 땅의 거버넌스, 북극의 거버넌스와 원주민
-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
 - 원주민의 재산권, Finnmark 법과 국제법
- 남극과 인권
 - **인류공동의 유산과 미래세대의 권리**, 남극: 북극 거버넌스에 대한 교훈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 The Polar Organization, 현존하는 국제기준, UN인권위의 사례



1. 극지법심포지엄 / 주요 이슈 (3)

2011 심포지엄

- 주권(sovereignty), 북극 그리고 해양법
- 헌법의 발전
- 자연자원
- 원주민의 권리
- 기후와 환경
- 남극
- 안보 정책 및 안전 이슈
- 북극이사회

2012 심포지엄

- 극지와 국제법의 발전
- 헌법 : 자연자원, 원주민 인권에 관한 각 국가의 헌법상 의무
- 북극 환경과 자원 : 고래와 물개 보호 및 관리
- 유럽연합과 북극 : EU정책과 북극(적용), EU와 북극의 기후변화
- 북극의 운항 규제 : 폴라코드
- 극지역의 국제 거버넌스 : 국제기구, 북극이사회, 남극관광규제
- 국제법-국내법상 원주민 : 이누이트, 사미족, 러시아, 캐나다



1. 극지법심포지엄 / 주요 이슈 (4)

2013 심포지엄

- 북극이사회와 북극 거버넌스
- 북극의 자원 관리
- 북극의 군사적 활동
- 북극 항행, 운송, **민간투자**에 관한 법제도
- 극지와 인권법
- 극지와 해양법
- 극지와 환경법

2014 심포지엄

- **극지에 대한 아시아의 이해관계**
- **ICJ 고래분쟁 사건**
- 극지 원주민(native peoples)
- 북극이사회와 유럽연합
- 남북극 가상의 미래
- 남극법과 북극법
- 남극 영유권 문제
- 극지의 보존과 보호



1. 극지법심포지엄 / 주요 이슈 (5)

2015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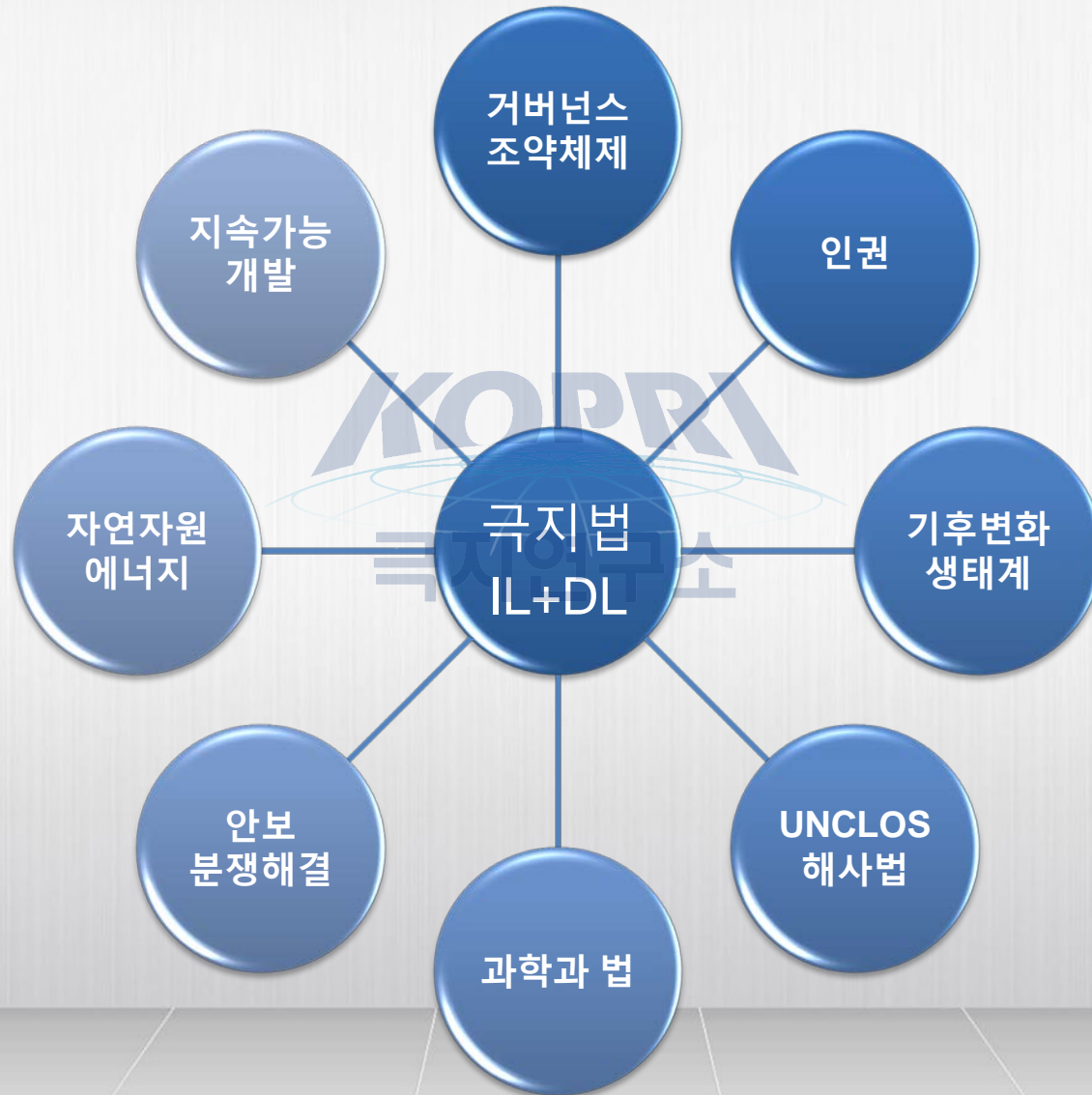
- 극지에서의 과학과 법
 - 과학과 법의 관계, 북극과학협력증진협정(초안)
- 극지법의 기본문제
- 북극의 위험과 안보
- 북극권 국가의 국내 입법 현안
- 환경과 에너지 정의(Justice)
- 자원 거버넌스

2016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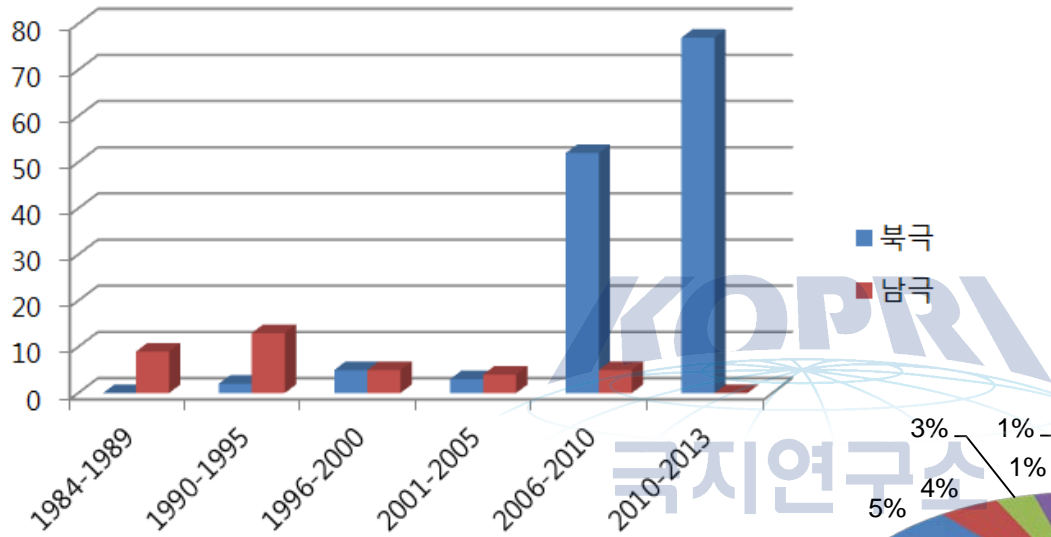
- 극지에서의 국제환경법 이슈
- 원주민의 권리
- 극지에서의 비국가 주체에 관한 규범
- 분쟁해결의 새로운 방법
- 북극의 비무장화
- 북극이사회와 남극조약체제의 진화
- 극지에서의 UN 및 기타 국제기구의 역할



1. 극지법심포지엄 / 이슈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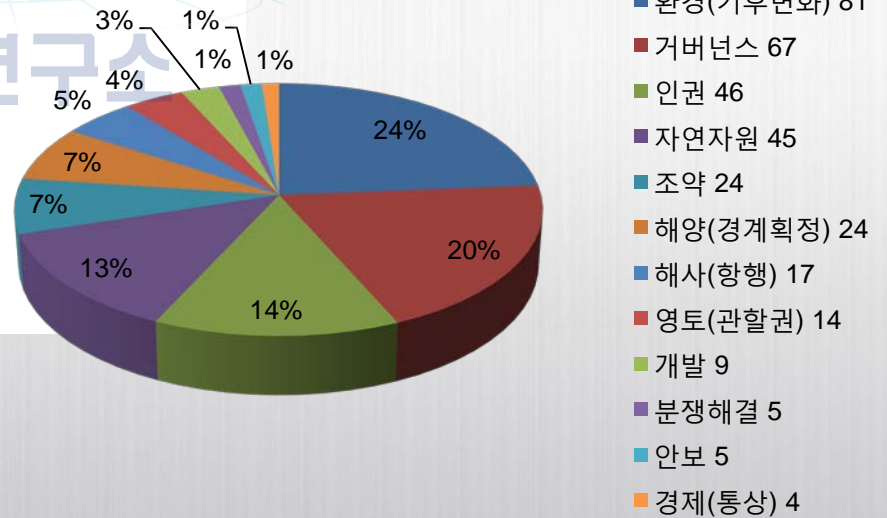


1-2. 참고 : 해외 극지법 연구동향



연대별 극지법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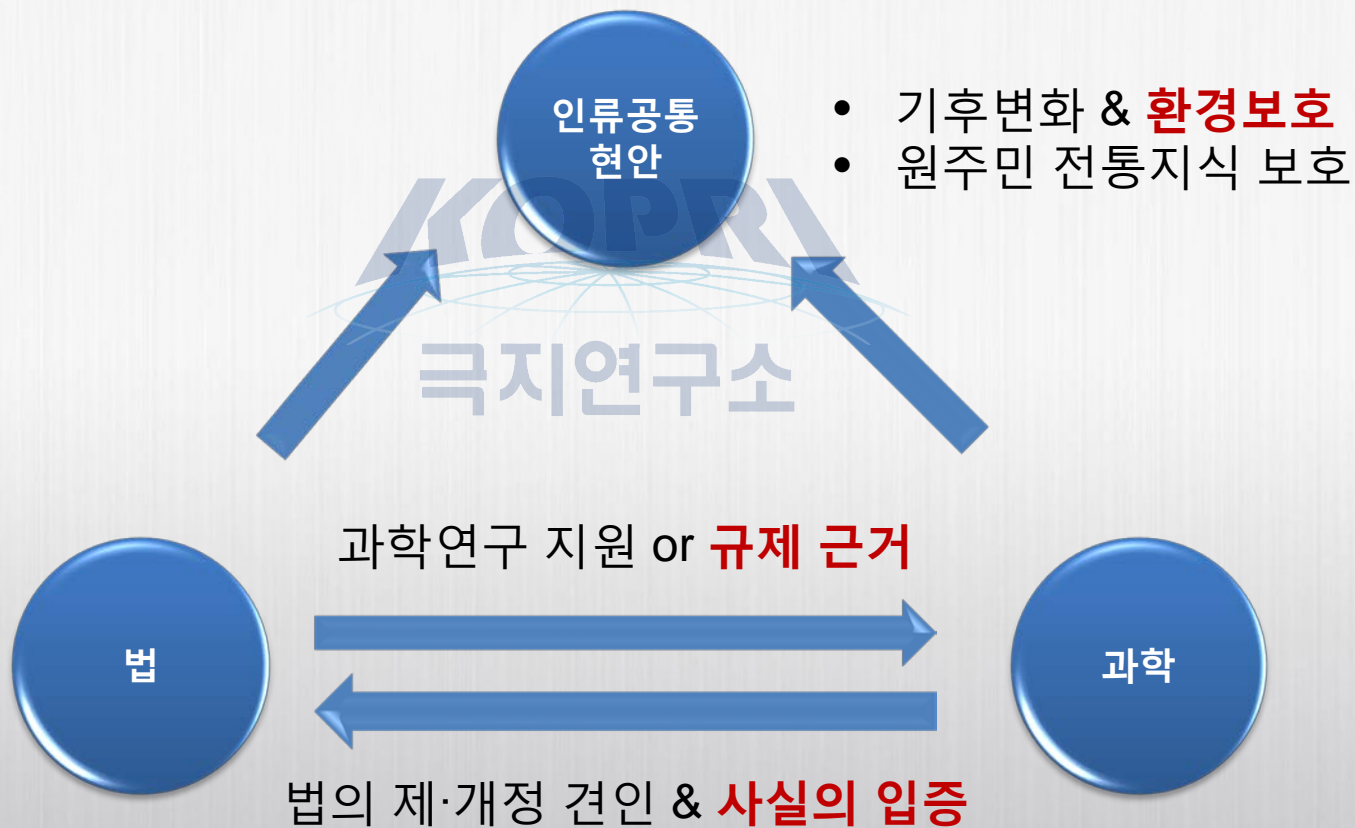
주제별 극지법 연구동향





2. 2015 심포지엄 / 극지 과학과 법

과학과 법의 상호관계





3. 숨은 이슈 /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조치를 연기할 수 없다. (리우선언 원칙15)

문제 제기

환경보호를 위한, 검증되지 아니한, 과학연구·실험은?

지속 가능한 개발

- 세대간 형평
-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
- 자연자원의 공평한 이용
- 개발과 환경의 통합

사전주의

- 과학적 불확실성
- 입증 책임 전환

차별적 공동책임

- 과거 환경책임의 현재화
- 공동책임의 달성을 위한 책임차별화



2. 2015 심포지엄 / 극지 과학과 법

국제 북극 과학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초안)

- 개요 : 북극이사회 과학협력TF 초안 작성 및 논의 중
- 주요 내용
 - 당사국(북극이사회 8개국) 간 과학협력
 - 공동 과학연구(프로젝트, 프로그램) 과제발굴 및 수행
 - 연구 데이터(자료, 샘플) 교환 및 접근개방
 - 연구 인프라 및 시설에 대한 접근 개방
 - 전통지식 및 (북극)지역 지식의 보호
 - 인력교육 협력 및 북극 과학자·전문가 교류
 - 비당사국과의 협력
 - 본 협정에 기여할 수 있는 비가입국과 협력 도모 가능
 - 비북극·비가입 국가 및 국제기구에 도움 제공 가능



2. 2015 심포지엄 / 제3극지 거버넌스

The 1st Pole
Antarctica

The 2nd Pole
Arctic

The 3rd Pole
Himalaya



유사점

고고도 또는 고위도의 극한(extreme)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解氷) 문제

원주민 또는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

활동인원의 수색 및 구조 문제

자원 및 물 관리 문제

극지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

히말라야 빙하의 영향을 받는 주요 강과 주변 인구 단위:명



40년 내 히말라야 빙하 물 부족 재앙(chosun.com 2009.12.07)

히말라야 거버넌스의 과제 : 영토분쟁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목적: **정치·군사 문제를 제외한** 경제·사회·문화·과학·환경 등의 상호발전 모색
- 회원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아프가니스탄
- 옵서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김토일 기자 / 20130723 YONHAPNEWS @yonhap_graphics(트위터)



자료/ 로이터, AFP 이재윤 기자 / 20121126 @yonhap_graphics(트위터)



2. 2015 심포지엄 / 그린란드 독립과 이누이트

그린란드 이누이트는 원주민?

- Kallallit Nunaat가 그린란드 최초 원주민, Inuit 정착 후 사라져..
- 원주민의 법적 정의 : 확립된 정의 없어..
 - 1989년 국제노동기구협약 169호
 - 2007년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 이미 문명화·현대화된 그린란드인도 보호대상 원주민인가?
 - 이누이트는 원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나,
 - 덴마크 정부가 이들을 원주민으로 인정하고, 1989년 협약에 따른 권리 인정

그린란드가 독립을 원한다면?

- 법적 지위는 민족자결(self-determination)의 주체
 - 민족자결주체 시민의 권리보호 vs. 북극이사회 원주민 보호
- 국가성립요건을 갖추었는가?
 - 영토, 국민, 정부(주권)
- Home Rule Act 및 Self-Government Act로 그린란드 자치권 확보
 - 그러나, **외교권과 국방권은 제외!**
- 국가승인 요건을 갖추었는가?
 - 영토, 국민, 정부(주권) + **국제법 준수 의지 및 능력**
 - 경제적 자립 가능성 의문



3. 숨은 이슈 / 환경난민

국제법상 ‘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상주 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난민지위협약 제1조)

- 경제적 난민? NO. 환경난민? NO. 오로지 정치적 난민.

문제 제기

- 만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는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면, 이러한 무력한 국가를 ‘특정 사회집단’ 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제2, 제3의 투발루 가능성?
 - 히말라야 해빙의 재앙?

감사합니다.
극지연구소